

# 우체국 청춘연금통장 특약

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청춘연금통장’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조 【예금의 성격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.

## 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## 제6조 【기본이율】

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
## 제7조 【우대이율】

① 우대이율은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다

음 항목별 우대금리 표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고 연 0.6%p 우대이율을 적용한다.

(단위 : 연 %p)

구 분	내 용				
연금 금리(Ⅰ)	월평균 50만원 이하	월평균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		월평균 100만원 초과	
	0.1	0.2		0.3	
연금 금리(Ⅱ)	○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후 동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후 이용실적				
	월 30만원 이상	월 40만원 이상	월 50만원 이상	월 60만원 이상	월 70만원 이상
	0.1	0.2	0.3	0.4	0.5
	○ 동 계좌를 통해 우체국 적립식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				
	월 30만원 이상	월 40만원 이상	월 50만원 이상	월 60만원 이상	월 70만원 이상
	0.1	0.2	0.3	0.4	0.5
요구불 청고객 금 리	○ 우체국 요구불 계좌 처음 개설한 경우 연 0.2%p * 단,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, 익월 말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 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				

※ 4대 연금이체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『국민연금, 공무원연금(또는 별정우체국연금), 사학연금(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), 군인연금』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본다.

②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갈음한다.

## 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매 결산일(매월 넷째 토요일)에

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, 제7조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이율만 적용된다.

② 우대이율은 매월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7조에서 정하는 우대이율 조건이 충족되면 실적에 따라 적용한다.

### 1. 연금금리(I)

○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월평균고 실적이 우대이율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당월 결산기 동안 적용

### 2. 연금금리(II)

○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계좌 지정하고 후 전월 이용 실적(누계액)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

※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(신용결제 제외)

○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 적립식상품의 자동이체계좌로 지정하고 월 자동이체금액(누계액)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

### 3. 요구불 첫고객 금리

○ 우체국 요구불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금리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

일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

\* 첫 고객 제외대상

- 활동계좌, 정리계좌 중 요구불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한 고객

- 1년 이내 우체국 요구불계좌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

단, 국고 귀속된 요구불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임

### 제9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(원가일)에 통장에 입금한다.

### 제10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.
- ② 최초 예금일에서 원가일 전일까지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다음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 계산 기간(결산기)으로 한다.
- ③ 매일의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하여 예금액별로 해당이율로 매일 이자를 계산한다.

### 제11조 【부가서비스 제공】

- ① 이 예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서비스 제공 조건에

서 정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당월 5일부터 익월 4일  
까지 적용된다.

구 분		서비스 내용
I	전월 연금 이체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D/ATM 이용수수료 면제(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출금, 우체국 간계좌이체, CMS, 가상계좌이체에 한함)</li> <li>○ 전자금융(인터넷, 모바일 등) 타행이체,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</li> <li>○ 현금 IC/ONE PLUS카드 발급 면제</li> </ul>
II	전월 연금 이체 실적 + 연금금리(II) 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CD/ATM 이용수수료 면제(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출금, 우체국 간계좌이체, CMS, 가상계좌이체에 한함)</li> <li>○ 전자금융(인터넷, 모바일 등) 타행이체,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</li> <li>○ 현금 IC/ONE PLUS카드 발급 면제</li> <li>○ 통장재발행수수료, 제증명 수수료 면제</li> </ul>

- ②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신규 가입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조건에 상관없이 부가서비스(I)이 제공된다.
- ③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epostbank.go.kr](http://www.epostbank.go.kr))에 게시한다.

## 제12조 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하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